
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59호

덕천동 347-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

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47-3번지 일원의 '덕천동 347-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' 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 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북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4일

부산광역시장 북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6. 1. 14.(수) ~ 2026. 1. 27.(화) (14일간)

2. 공람장소

가. 평일 :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재개발팀(임대청사 3층)

나. 주말 및 공휴일 : 부산광역시 북구청 당직실(본관 1층)

3. 공람내용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가로주택정비사업 / 덕천동 347-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덕천동 347-3번지 일원(구역면적 : 5,613.8㎡)

다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
라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: 덕천동 347-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[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3, 8층]

마. 변경사항 : 조합임원 변경

4. 공람도서 : 계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5. 의견제출방법 : 공람기간 내 북구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서 제출

(☎051-309-4611~4)

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 공람 의견서

- 덕천동 347-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-

의견 제출자	성명		연락처	
	주소			

☐ 제출의견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6. . .

의견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